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결 과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03년 1월 9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1월 15일

○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별표 1(국내여비)과 별표 2(국외여비)에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國內 및 國外여비지급 기준이 각각 조정된 때에는
- 동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新設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먼저 동 조례는 그 동안 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00년 5월 4일이며
 - ① '96. 4, ② '97. 4, ③ '98. 5, ④ 2000. 3, ⑤ 2000. 5
-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은 2002년 1월 4일자로 숙박비가 41,000원에서 46,000원 상향 조정 되었고 동 조례안은 1년을 경과한 후 금년 1월에 개정하게 이르렀음.
- 타 시도 교육청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울산, 강원은 별표2의 숙박비 금액을 변경 조정 하였으며, 기타 교육청은 개정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 1, 2에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國內 및 國外 여비지급 기준이 각각 조정된 때에, 동 조례를 개정하기 前이라도 조정비율에 따른 경비를 각각 지급 할 수 있도록 新設하는 것은
-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이라 생각 함.
- 그러나 동 조항의 신설로 인해 조례의 개정을 동한시 하므로써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간의 법체계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권이 침해 또는 위축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 동 조항의 신설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토론요지 : 없음.

5.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동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아래란에 “1”을 “비고 : 1”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p> <p>(단위:원)</p>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p> <p>(단위:원)</p>
<p>1. 철도운임구분표 1등급은 세마을호 특실 을 말 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 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 도운임을 지급한다.</p> <p><신 설></p>	<p>비고 : 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 원국내여비 조정비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p>
<p>[별표 2]</p> <p>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p> <p>(단위:미분화)</p>	<p>[별표 2]</p> <p>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p> <p>(단위:미분화)</p>
<p>비고 : 1. 숙박비·식비의 동급구분은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4]의 비고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동급을 적용한다.</p> <p>2. 1의 국가 및 도시별 동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동급을 적용한다.</p> <p><신 설></p>	<p>비고 : 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 원국외여비 조정비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